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8. 26 선고 2021가단355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21. 9. 24. 접수 제199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약정금 채권

1) 원고는 방송 사업, 광고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4. 9. 8.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1995. 3. 29. 설립된 회사이다.

2) C는 원고와 사이에, C에 광고대행을 의뢰한 고객사들의 이름과 슬로건을 원고가 라디오방송 중 송출해주는 대가로 원고에 협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러나 C가 협찬금 지급을 연체하여 2021. 8월 말까지 미지급액이 199,316,400원에 이르렀다.

3) 원고는 2021. 9. 23. 대전지방법원 2021차전116531호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199,31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2021카단53622호로 위 약정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원고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2021. 9. 24. 발령되어 2021. 10. 14. 그대로 확정되었고, 가압류 신청사건에서는 2021. 9. 27. 담보제공명령이 났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해버린 상태였고, 원고는 2021. 10. 6.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C의 처분행위 등

1) C는 2021. 9.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8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2021. 9.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21. 9. 30. 대전지방법원 2021카단53709호로 위 약정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C 소유의 지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1. 10. 7. 인용결정이 내려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가압류등록 촉탁이 이루어졌으나, 2021. 10. 8. 그 가압류등록 전 C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록하여 가압류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한편 D 주식회사가 2021.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가단35554호로 C에 대한

약정금 채권 187,330,450원(대전지방법원 2021. 10. 21. 자 2021차전116309 지급명령 확정)을 피보전채권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4) C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세 약 2,470만 원의 이 사건 승용차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인 E조합(이하 'E'이라 한다) 명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각 대출금채무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실제 채무액은 6억 원, 8,019만 원이었다. 또한 이 사건 승용차에는 피담보채무액 1,595만 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명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자동차세 171,410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5) C의 이 사건 처분행위 후에도 E 명의 각 근저당권과 F 명의 근저당권은 여전히 그 채무자가 C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사해행위 당시에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약정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승용차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E에 대한 대출금채무, F에 대한 저당채무, 원고와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약정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고(이후 이 사건 승용차도 처분하였다), E 명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9억 6,000만 원인 점,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8억 8,000만 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은 E에 담보로 제공된 6억 8,019만 원을 넘는다고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 사건 처분행위는 실질상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다.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받을 당시 C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는지, 채무초과상태였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채권이 C가 원고에게 합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돈인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특별히 이 사건 약정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권보원

별지

목 록

1. 보령시 G 공장용지 7035㎡

2. 보령시 G

[도로명주소] 보령시 H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208㎡

3. 보령시 I 도로 98㎡

4. 보령시 J 도로 232㎡. 끝.